

<p>제2019-159호 2019년 8월 23일(금)</p>	<p>시  보</p> <p>여수시</p>	<p>시 정 지 표</p> <p>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고 시

공 고

- 여수시 공고 제2019-2078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3
- 여수시 공고 제2019-2083호 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4
- 여수시 공고 제2019-2085호 도로지정공고[소라면 사곡리 1177-1번지] 8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전문건설업 폐업 공고

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0조의2(건설업의 폐업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23일

여 수 시 장

1. 폐업대상 업체

상 호	영업 소재지	폐업대상 건설업종 (등록번호)	법인번호	폐업일자	폐업사유
(주)디엔티건설 (조용일)	여수시 웅천동1873-1 여수이순신마리나 3층(시전동)	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(여수2018-09-03)	206211-0067***	2019.8.23.	사업포기

2. 공고 기간: 2019. 8. 23.~9. 6.(15일)

3. 공고 장소: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

4. 기타

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(<http://www.kiscon.net>)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공 고

「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23일

여 수 시 장

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1. 폐지이유

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,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기금존속기간이 만료되나 기금사업실적이 적어 기금의 존치 실익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.

나.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·운용된 기금, 기타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함.

3. 입법 예고기간 : '19. 8. 23. ~ '19. 9. 16.(24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(기후환경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전화번호

호

나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FAX), 직접방문, 이메일(E-Mail) 제출

- 1) 주 소 : 우)59689 여수시 시청로 1길 23(학동)
여수시장(기후환경과장)
- 2) 전 화 : 061)659-3803, 팩스 : 061)659-5823
- 3) 이메일(E-Mail) : totolol23@korea.kr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·운용된 기금 및 기타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.

도로 지정 공고

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595-11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㎡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계		28.6m	1.12m	32㎡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소라면 사곡리	1177-1 번지	28.6m	1.12m	32㎡	"	
이 하 빈 칸					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(061-659-412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. 8. 12.

여 수 시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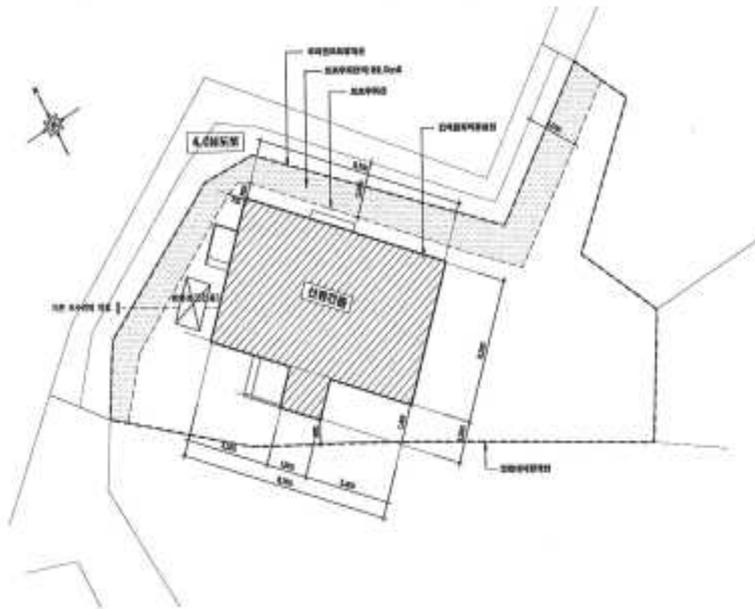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현황도

•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축척 <임의>



현황도

축척 [] 1/600, [] 1/1,200